

大田廣域市 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 |
|----------|----|
| 議案 番號 | 64 |
|----------|----|

提出年月日 '95. 11. .

提出者 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던 宅地開發, 住宅事業을 '95年7月1日부터 한밭開發公社에서 引受하여 推進하게됨에 따라 이와 關聯된 資本을 出資하기 위한 것임.

2. 主要骨子

한밭開發公社의 授權資本金을 390億원에서 1400億원으로 增額하고 柱式發行總數를 780萬株에서 2,800萬株로 改正함(案第4條, 第5條)

3. 參考事項

- 가. 公營開發事業團 資產 評價 結果
- 나. 한밭開發公社 出資計劃
- 다. 商法 第437條(發行豫定 株式 總數의 增加)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390억원”을 “1,400억원”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중 “780만주”를 “2,800만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390억원으로</u>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 ③ (생략)</p> | <p>제4조(자본금) ① ----- <u>1,400억원으로</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제5조(주식의 발행등)</p> <p>① ~ ④ (생략)</p> <p>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780만</u>주로 한다.</p> <p>⑥ (생략)</p> | <p>제5조(주식의 발행등)</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2,800</u></p> <p>만주로 ---.</p> <p>⑥ (현행과 같음)</p> |

3. 參 考 事 項

가. 公營開發事業團 資產再評價 結果

- 평가기준일 : '95. 6. 30
- 평가기관 : 청운회계법인
- 평가대상 :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주택관리사업
- 평가결과

- 자산 : 296,053백만원, 부채 : 183,124백만원 = 자본 112,929백만원

- 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 자 산 | | 부 채 | | 비 고 |
|--|---------|---------------|---------|-----|
| 계 | 296,053 | 계 | 183,124 | |
| 현 금 | 700 | 공단 특별회계 차입금 | 40,400 | |
| 택지분양 미수금 | 9,630 | 지역 개발 기금 | 28,750 | |
| 주택·상가분양 미수금 | 476 | 국민 주택 기금 | 20,880 | |
| 송촌택지 사업비 | 131,105 | 송촌택지선수금 | 68,489 | |
| 원내주택 사업비 | 38,742 | 원내주택선수금 | 4,821 | |
| 미분양 용지 (21,980평) | 40,651 | 임대 APT 보관 보증금 | 10,809 | |
| 미분양 상가 (17개점포) | 1,273 | 원인 행위 미지급금 | 8,471 | |
| 임대APT(3,930세대) 상가 (장기임대주택 - 11,949) | 72,914 | 특별수선충당금 | 445 | |
| 임차보증금 | 550 | 차입금이자등 | 59 | |
| 이자미수금·기타 | 12 | | | |

나. 한밭開發公社 出資計劃

- 자본금 현황 [수권자본금 : 390억원
 [납입자본금 : 98억원

 - 공영개발사업이관에 따른 출자
 - 출자예정액 : 112,929백만원(자산재평가 결과 '95.6.30현재)
 - 자산 : 296,053백만원, 부채 : 183,124백만원

 - 1차 출자(현물) : 29,149백만원
 - 출자내역 : 48필지, 36,479m²(미분양된 근린생활 시설용지)

 - 출자액 변경 : 29,149백만원 → 25,773백만원
 - ※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출자현물을 재평가한 금액으로 변경

 - 출자총액 : (기출자액)9,800백만원+(1차출자액)25,773백만원= 35,573백만원

 - 2차 출자예정액 : 83,780백만원
 -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재평가한 금액으로 확정
 - ※ 상법 제437조에 의하여 증자는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수권 자본금을 1,400억원으로 증액

 - 35,573백만원 × 4배 = 142,292백만원
-
- 다. 商法 第437條(發行豫定株式總數의 增加)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년 12 월 일

내 무 위 원 회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년12월 1일
내 무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8일
3. 상정일자 :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5. 12. 1)
상정, 심의,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

1. 제안이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주택사업을 '95년7월1일부터 한밭개발공사에서 인수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본을 출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한밭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9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증자하고 주식발행총수를 780만주에서 2,800만주로 개정함. (안 제4조,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조준봉)

본 안건을 금년 7월1일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주택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본을 출자하기 위한 내용임.

—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9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증자하고 주식발행총수를 780만주에서 2,800만주로 늘려서 개정하는 사항임.

— 동 조례를 개정케된 사유로는 95.6.30 기준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자산평가결과 총자산이 2,960억원, 부채 1,831억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총 자본이 1,129억원인바, 수권자본금 390억원 한도내에서 미분양토지 48필지 291억원을 현물로 출자하였으나,

감정평가에 의하여 258억원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현재 한밭개발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기존 98억원을 포함한 356억원임.

— 그리고 총 자본 1,129억원에서 291억원을 제외한 잔여자본 838억원의 출자를 위하여는 수권자본금 390억원을 1,400억원으로 증자하여

야 하는바, 상법 제437조 규정에 의거 증자는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현재 출자한 자본금 356억원의 4배수

범위내인 1,400억원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발행예정 주식수도 790만주를 2,800만주(산출기초 : 수권자본금 1,400억원 ÷ 1주당 5,000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1일자로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인수한 후 출자금의 제한등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5개여월동안 추진해온바, 추후 본격적인 경영수익증대 차원에서 본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앞서 설명드린 동 조례안의 내용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토론요지 : 생략

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